

제조물책임법의 소비자보호 효과분석

The Impact Analysis of Product Liability Law with a Policy Delphi Method from a consumers' perspective

코넬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박사과정 강 효 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 수 이 기 춘

Consumer Economics & Housing, Cornell Univ.
Doctoral student : Hyojin Kang
Dept. of Consumer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 Kee-Choon Rhee

◀ 목 차 ▶

- | | |
|------------------|---------------------|
| I. 서 론 | V. 제조물책임법의 소비자보호 효과 |
| II. 문헌 고찰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V. 연구 결과 | |

<Abstract>

PL law seeks consumers' just compensation and effective deterrence through shifting liability principle from negligence to strict liability. Impact analysis of Product Liability(PL) Law requires consumers' perspectives. This paper performed a policy delphi to predict the impact of PL law on consumers. The study surveyed the opinions of 30 specialists in PL area, ranging from government, officials, professors, researchers, consumer activists, to business executives, for three time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PL law can contribute to damage compensation significantly in that it stimulates consumer complaints through non-court procedures. It is very unlikely that suits will be increased rapidly due to PL because of the current law environment. The degree of influence of PL law on damage compensation will vary according to the content of PL law.

Secondly, PL law can contribute to deterrence in that it encourages companies' efforts for product safety while it doesn't undermine consumers' attentions to safety. The influence on companies' efforts will vary according to the content of PL law.

I. 서론

제조물책임법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자동차급발진문제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된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0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목표가 상품사고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배상하고 상품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한다면(Epstein, 1985; Litan, 1991; 구분천, 1996; 김일중, 1997), 제조물책임법을 소비자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조물책임법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법을 평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는 약 3년에 걸친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을 위한 제반환경을 어떻게 구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입법된 제조물책임법이 규범적인 법에서 그치지 않도록 한다. 소비자보호는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는데서 그친다기 보다는, 입법에서부터 비로소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소비자의 관점을 정면으로 부각시킨 연구는 드물다. 제조물책임법의 법리(최병록, 1994; 이영애, 1994; 손정연, 1996), 외국의 입법례(한국무역협회, 1990; 한국공업표준협회, 1991; 박기동 1994), 기업의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한 연구(하건호 1987; 조성한 1992)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과 대조적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사회·경제적인 시행효과를 분석한 연구(강한나 1995; 송태희 1995; 구분천 1996; 최병록 1996)가 있지만 기업 활동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반사적 이익을 논의하는데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경우에도 제조물책임법의 피해구제 측면만을 고려하였을 뿐 피해예방 측면을 다루지 않았다(허경옥 199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의 피해

구제 측면과 피해예방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정책 델파이(Delphi)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제조물책임법을 한국의 사회·경제·법·제도적 맥락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II. 문헌 고찰

1. 제조물책임법의 개념

제조물책임법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과실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법제도내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려면, 제조업자 과실의 존재,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여부, 그리고 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을 채택하게 되면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주관적 과실을 입증하는 대신 상품의 객관적 결함이 존재함을 입증하면 된다.

상품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제조물책임법(1999년 12월), 대법원1999.2.5.선고97다26593판결). 특히 1999년 12월에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제 2조 2항가-다).

2. 주요 쟁점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논의에는 제조물의 범위, 결함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추정 여부, 배상한도액의 설정, 개발위험의 항변 인정여부 등이 있다.

1)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 중심이 된다. 미가공된 농산물, 수산물, 수렵물 등은 농민에게 위

험분산능력 및 배상능력이 부족하고, 원인물질에 대한 사전규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제조물에서 제외되는 경향이다. 제조물책임법(1999)도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제조물로 규정하고 있다(제 2조 1항).

2) 결함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추정

입증책임은 소송상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법률을 판단하는 데 따르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을 지는 자는 어떤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스스로가 사실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최병록, 1996).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입증책임원칙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지정(미국, EC 지침, 독일 등)하거나 소극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한국, 영국, 일본 등)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조사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이상정·박인섭, 1989).

3) 배상한도액의 설정

손해배상의 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의 판결액이 너무 과다하여 기업이 심한 타격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미국에서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제한하는 연방법률은 없고, 13개주에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6개주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미국하원을 통과한 제조물책임개혁법(1995년 3월)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3배 또는 25만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EC 지침은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각 회원국에게 7만 ECU(약 650억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제 16조 1항)한다. EU 국가 중에서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만이 상한을 설정하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는 한도액 규정이 없다.

4) 개발위험의 항변

개발위험의 항변은 상품의 유통(또는 인도)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상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제조자가 알지 못하거나 인식하였다 라도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조자가 책임을 면하는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발위험의 항변은 기술혁신의 위축을 막아 상품 품질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다. 한국(제 4조 1항 2목), 대부분의 EC 국가들(EC 지침 제 15조 2항, 선택사항), 일본(제 4조 1호), 그리고 미국의 대다수의 주에서 이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개발위험의 항변은 제조물 책임법의 근간인 엄격책임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 다거나(Burrows, 1992), 개발위험도 다른 유형의 위험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신상품이 수반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이상정·박인섭, 1989)는 등의 견해가 그것이다.

III.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조물책임정책을 원인으로, 그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결과로 본 다음, 그 결과를 인과적으로 추정하는 영향분석(Impact Analysis)을 기초로 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이 직접·간접으로 사회경제, 법제도 전반에 파장을 가져오면서 다른 변수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결과가 하나의 수치로 통합하여 제시되기 어렵다. 제조물책임정책의 다면적인 영향을 미리 설정된 기준이나 사회가치에 비추어 평가하는 영향분석 방법이 정책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 하겠다(노

화준, 1997).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미치는 영향—피해구제에 대한 예측 및 예측근거, 한국소비자보호원안(소보원안 1994년)의 민감도 분석—을 예측하도록 하였다. 상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일차적으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배상을 받거나, 자발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과 같은 재판외 조정·화해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소송을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송에 의한 피해구제와 그 밖의 피해구제로 이분하여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양자가 변화하는 양상이 각각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가 소보원안(1994)과 주요쟁점(제조물의 범위, 결함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추정 여부, 배상한도액의 설정, 개발위험의 항변 인정여부)면에서 대조적인 대안적 법안을 가상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소보원안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보원안(1994)을 기본으로 분석한 이유는 본 연구를 수행할 당시 이미 소보원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응답자가 본 안을 충분히 고찰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제조물책임법을 소비자정책으로 간주할 때 본 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미치는 영향—소비자의 주의수준, 기업의 안전노력, 영향 요인—을 예측하도록 하였다. 제조물책임법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소비행동, 기업의 안전을 위한 연구개발노력, 안전규제의 압력 등이 상품의 안전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주의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정도를 가늠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상품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소보원안(1994)과 대안적 제조물책임법안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알아 보았다. 그 밖에 제조물책임법이 상품의 안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정부의 안전기준과 결합

과의 관계, 기업의 주의·관찰의무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2. 연구 방법

1) 정책 델파이 기법의 채택

제조물책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자 한 사람이 제조물책임법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예측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 연구는 제조물책임법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구조하는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미래 사건에 대한 식견을 획득, 교환, 그리고 개발하는 판단적인 예측절차이다(Dunn, 1994). 델파이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니라 예측대상과 관련된 일정한 전문가 집단을 동원하여 예측한다는 데 있다. 일련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집단 내에서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며, 집단은 개인보다 위험부담의 성향이 더 높으므로 미래 예측에 있어서 개인으로서는 취할 수 없는 위험부담도 집단으로서는 감수할 가능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노화준, 1997).

이에 연구자는 델파이 기법이 제조물책임법 사안에 대하여 침예하게 대답하는 개개의 견해를 파악하고, 심오한 제조물책임 이론에 관한 개개인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델파이 기법 중 정책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전문가들간의 합의를 유도하려는 다른 방식들과는 달리 정책 델파이 기법은 첫째, 정책에 대하여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상이한 견해를 표출시키고 둘째, 각각의 대안이 가져올 효과와 방향을 예측하며 셋째, 모든 대안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주력한다(Turnoff, 1975). 그러므로 연구자는 제조물책임법의 다면적 견해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의견의 불일치가 오히려 일상적이라는 가정하에 갈등을 이용하여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책 델파이 기법을 채택하였다.

2) 델파이 참여자의 선정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추출하는 연구방법이므로 대상의 선정이 연구의 성패를 좌우한다(Dietz, 1987). 특히 정책 델파이 기법은 주창자와 찬·반론자간에 상이한 견해를 구조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문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하고 이질적인 개인과 기관들을 택하여 '식견있는 창도자 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Dunn, 1994).

본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학계, 법조계, 소비자 관련기관, 기업 관련기관, 보험업계 등 6개 분류에서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제조물책임법과 관계된 저서나 논문이 있었는가를 응답자의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법조계의 경우에는 주제의 성격상 관련 저서가 없더라도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경우 응답대상자로 포함시켰다.

3회에 이르는 응답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델파이 과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선택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1997년 7월에서 부터 9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반복되었다.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기 직전 기존의 소보원안(1994년)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본격적인 영향평가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공청회, 학회, 여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활발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델파이 조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3회의 반복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1회 조사는 참여자의 심리적 부담과 혼란을 고려하여 보기를 수반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제시된 보기가 응답자의 의견을 일정한 방향으로 구속하지 않고, 주어진 보기로 파악할 수 없는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

2회, 3회 조사에서는 전회의 설문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응답자가 이전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자신의 판단을 재평가하고, 그 판단에 대한 명확한 이유나 가정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형적인 델파이 기법과는 달리 정책 델파이 기법에서는 델파이 회수를 결정하는 정지기준(stop-ping criterion)으로 사용되는 연속된 델파이 설문간 응답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Turnoff, 1970). 따라서 응답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카이 자승 검정을 생략하였다.

또한 정책 델파이 기법이 응답자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내기 보다 불일치와 갈등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간 혹은 집단간의 의견차이를 표시하는 지수를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소비자의 피해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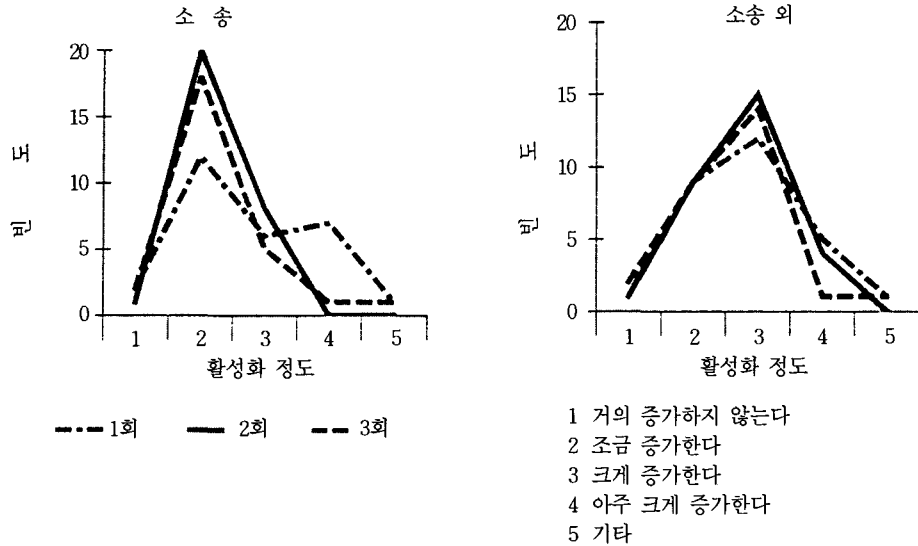
1) 피해구제의 활성화

소보원안(1994)을 1997년 현재 도입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비중과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에서 소송 이외의 경로(한국소비자보호원 및 법원의 조정·중재,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 구제 등)를 통하여 피해구제를 받는 소비자의 비중이 각각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델파이 조사 결과(<그림 1>) 소보원안(1994)을 내

<표 1> 델파이 응답자의 구성

분 류	계(%)	1회	2회	3회	
정부기관	2(6.7)	1	2	2	
학계	경제학계	4(13.3)	4	4	4
	법학계	6(20.0)	5	6	5
법조계	5(16.7)	5	5	5	
소비자관련기관	5(16.7)	5	4	4	
기업관련기관	6(20.0)	6	6	5	
보험업계	2(6.7)	2	2	2	
계	30(100.0)	28	29	27	



〈그림 1〉 소보원안의 제정시 피해구제의 활성화 정도

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화정도는 소송보다는 소송 이외의 경로를 통한 구제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 제조물책임법안의 민감도

제조물책임법이 피해구제에 미치는 영향은 법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의존한다. 그리하여 연구자가 소보원안과 네가지 항목(제조물의 범위, 결함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추정 여부, 배상한도액의 설정, 개발위험의 항변 인정여부)의 내용을 달리하는 대안적 법안을 구성하여 소송에 의한 피해구제

의 활성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소송이외의 피해구제의 활성화 정도를 제외한 이유는 소송에 의한 피해구제 양상과 동일한 결과가 기대되고, 소송을 통한 변화양상이 소송 외에 의한 것보다 더욱 뚜렷하여 예측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소보원안(1994)과 대안적 법안, 그리고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안의 주요 내용은 〈표 2〉과 같다. 대안적 법안과 소보원안과의 차이는 대안적 법안의 제정시 소 제기의 상대적 증가율과 소보원안의 제정시 소 제기의 상대적 증가율과의 차이로 측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법안의 주요 내용

	소보원안(1994)	대안적 법안 (연구자의 가정안)	제조물책임법(1999)
제조물의 범위	제조·가공된 동산	그 외 분양공급 주택외의 부동산, 1차 농산물을 포함	제조·가공된 동산
추정 조항	결함 및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추정	추정조항의 불포함	추정조항의 불포함
배상한도액	설정하지 않음	설 정	설정하지 않음
개발위험의 항변	인 정	불인정	인 정

〈표3〉 제조물책임법의 민감도: 항목별 피해구제의 활성화

(단위: 명)

항 목	차 이	회 수	차 이						평균	표준편차	
			-15	-10	-5	0	5	10			15
제조물의 범위	1회		0	1	0	9	14	1	1	327	446
	2회		0	0	1	4	13	10	1	603	431
	3회		0	1	1	2	14	7	0	500	469
추정 조항	1회		2	7	12	2	2	1	0	-5.38	5.82
	2회		3	11	10	2	1	2	0	-6.21	6.36
	3회		3	9	9	2	2	1	0	-6.15	6.21
배상한도액	1회		0	2	4	16	2	1	0	-0.80	4.25
	2회		0	2	11	11	4	1	0	-1.96	4.65
	3회		1	3	8	10	3	1	0	-2.31	5.52
개발향변의 위험	1회		1	0	1	10	10	3	1	2.88	5.69
	2회		0	1	1	3	17	6	1	5.00	4.82
	3회		0	1	0	1	17	7	0	5.58	4.08

차이:(대안적 법안의 제정시 소 제기의 상대적 증가율)-(소보원안의 제정시 소 제기의 상대적 증가율)

전 회에 걸쳐 소보원안에 비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항목은 제조물에 분양공급 주택외의 부동산이나 1차 농산물을 포함하는 경우와 개발위험의 항변을 부정하는 경우였다. 비중이 감소하는 항목은 결합의 존재 및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이 없는 경우와 배상한도액을 설정하는 경우였다.

전 회에 걸쳐 소비자의 비중의 변화하는 정도가 가장 큰 항목은 추정 조항이었고 다음이 제조물의 범위, 개발위험의 항변, 그리고 배상한도액 순이었다. 제조물의 범위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설문 회수가 거듭될수록 소비자의 비중이 변화하는 정도가 증가하였다. 전 회에 걸쳐 전문가들간의 의견 대립이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추정 조항이었는데 반하여, 결과의 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배상한도액이었다. 그리고 배상한도액 항목은 설문 회수가 증가할수록 의견의 차이가 커졌는데 반하여, 개발위험의 항변 항목은 설문 회수가 증가할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호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제조물책임법의 민감도 예측 근거를 중립적 판단을 배제한 확실성 척도(확실히 믿을만하다 4점~믿을 수 없다 1점)로 측정하였을 때 (1) 제기되는 소

송의 수는 소송구조에 주로 달려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송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제조물책임 소송 양상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2회 2.31, 3회 2.48) (2) 큰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업의 인식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 외 피해구제에서 충분히 배상받지 못할 것이다(2회 2.31, 3회 2.44) (3)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여 제조물책임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을 포함하는가에 따라 피해구제 실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2회 1.93, 3회 2.70).

2. 소비자의 피해예방

1) 소비자의 주의 수준 변화

본 연구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주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제조물책임법 전문가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예측하도록 하였다. 텔파이 조사 결과 소비자의 주의 수준이 증가하지만(주의 수준의 상승 64.2%) 증가하는 정도는 크지 않으며(약간 증가 71.4%), 소비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델파이 조사결과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 이는 소비자와 제조자의 안전에 대한 투자가 한계 지점에서 대체제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의 안전 제고 영향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축소된다는 가설과 대립된다(Litan, 1988). 반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소비행동이 변화하지만(61.4%), 대부분의 소비자가 제정 이전 이상으로 안전에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27.3%)는 일본 국민생활센터의 조사결과(國民生活 センター, 1996)와 맥락을 같이 한다.

2) 기업의 안전노력 변화

1회 조사 결과 소보원안(1994)을 1997년 현재 도입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기업이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노력하여 상품의 안전수준이 향상될 것(39.3%)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2회 및 3회 조사에서는 기업의 안전노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매우 우세하였다(2회 68.5%, 3회 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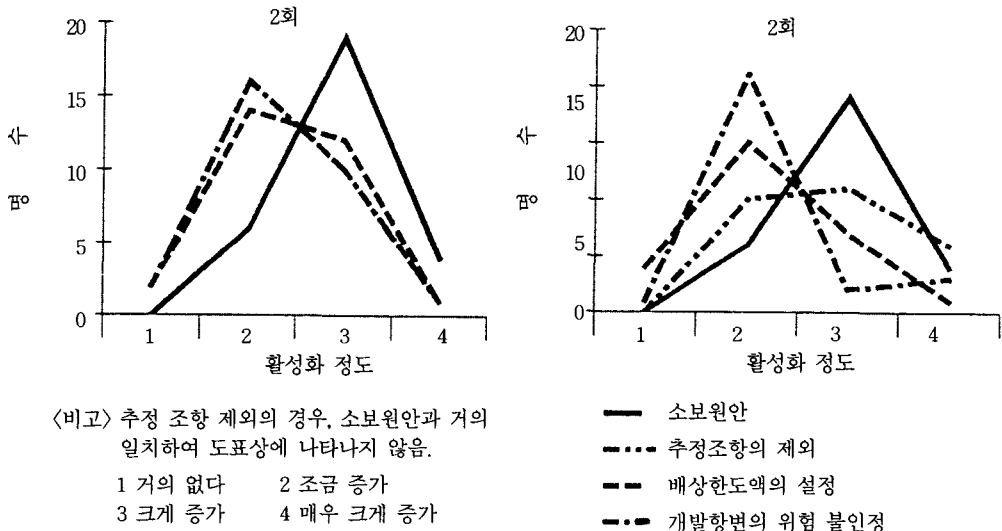
연구자는 소보원안과 세가지 항목(결함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추정 여부, 배상한도액의 설정, 개발위험의 항변 인정여부)의 내용을 달리하는 대안적 법안을 구성하여 소송에 의한 피해구제

의 활성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분석하였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표 2> 참고). 항목별 기업의 안전노력 변화정도는 <그림 2>와 같다.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의 추정조항이 없는 경우, 조사 회수가 증가할수록 소보원안과의 예측차이가 감소하고 의견의 일치도가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반면 배상한도액을 설정하는 경우, 회수를 거듭할수록 소보원안과의 예측차이가 증가하고 의견의 일치도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개발위험의 항변을 부정하는 경우, 회수가 증가할수록 소보원안과의 차이가 감소하고 의견의 일치도가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의 안전노력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항목은 개발위험의 항변 부정이고, 가장 불안정한 항목은 배상한도액의 설정이었다. 그러나 개발위험의 항변 항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도가 감소하였으므로, 결과에 대한 해석시 주의를 요한다.

한편 1회 조사에서 정부의 안전기준과 결함과의 관계, 기업의 주의·관찰의무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다. 2회와 3회에 걸쳐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정부의 안전기준과 결함과의 관계("정부로부터 합격판정,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KS, 우수등급을 인



<비고> 추정 조항 제외의 경우, 소보원안과 거의 일치하여 도표상에 나타나지 않음.
 1 거의 없다 2 조금 증가
 3 크게 증가 4 매우 크게 증가

<그림 2> 소보원안의 제정시 기업의 안전노력의 변화 정도

〈표 4〉 정부의 안전기준과 결함의 관계

태도	긍 정	부 정
근거	정부의 행동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정부의 판단과 제조물의 결함 판단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정부의 합격 판정·인가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고, 생산 초기에 시행되므로 결함이 없다는 보장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상품을 생산한 기업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다”)에 대한 부정의견(2회 79%, 3회 93%)이 긍정의 견보다 우세하여, 정부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기업의 제조물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긍정 및 부정의견에 대한 근거는 〈표 4〉과 같다.

개발위험의 항변과 관련하여 제기된 기업의 주의·관찰 의무(“기업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을 허용 하되,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인정한다”)에 대하여 긍정의 견(2회 86%, 3회 96%)이 우세하여, 기업이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후에도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관찰할 의무가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V.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보호에 미칠 영향

1. 소비자의 피해구제

1) 피해구제의 활성화

텔파이 조사결과 제조물책임소송이 매우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록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제조물책임소송이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기업과의 자율적 교섭이나 소비자 단체의 상담창구, 분쟁조정제도 등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에서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약 5%를 차지하고(공업진흥청, 1989), 피해구제의 약 10%만이 피해구제를 받았다(한국소비자보

호원, 1995). 그러므로 현재 상품관련 피해구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조물책임법의 잠재적 기여도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소비자의 금전적 능력이 기업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보다는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소송 이외의 경로가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으로 인하여 소송 이외의 경로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송 이외의 피해구제의 활성화 여부가 제반 여건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활성화 여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분쟁해결기관의 확대, 조정기관의 공정한 운용, 결함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기관의 확충 등의 제반여건에 달려 있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 소비자보호에 선연적으로 기여하는데 그칠 우려가 있다.

2) 제조물책임법안의 민감도

텔파이 결과는 제조물책임법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에 추정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정조항이 재판실무나 자율적 교섭을 교란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추정조항을 포함시킬 때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여 제조물책임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정조항의 포함여부가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의견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대체로 믿을만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조사 회수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의견이 증가하는 정도가 3가지 예측 근거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기 이전 1997년 판례나 사전교섭관계가 엄격 책임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청량음료병의 용기파손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무과실책임을 기본으로 한 소비자피해배상규정, 구조 내지 제조상

의 결함을 사실상 추정한 판례 대법 1992. 11. 24 다 18139, 고법 1996. 6. 19. 95 나 26389). 더 나아가 소비자의 추정조항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지는 않다(양덕순·이기춘, 1997)는 점을 보더라도 추정조항의 삼입으로 책임판단이 교란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1999)이 인과관계의 추정조항을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소비자의 피해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둘째, 배상한도액의 설정 여부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의 활성화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배상으로 인한 소송 외 피해구제의 위축에 대하여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시 과대배상이나 과소배상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소 제기자가 승소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을 대상으로 '배상액/피해액'의 평균이 90.3% 이고,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이 산정된 사례가 없었다(김일중·장재호, 1998).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1999)이 배상한도액을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을 소비자피해구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제조물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할 것인가를 소비자 피해구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제조물의 범위 여하 및 개발위험의 항변 인정여부에 따라 소 제기의 증가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소비자의 피해예방

1) 소비자의 주의수준 변화

텔파이 결과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으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여 안전제고의 효과가 상쇄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제조물책임법이 상품의 지시·경고를 충실

히 할 것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경고결함과 관련하여, 기업이 상품표시를 통하여 전달한 위험의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이해한다는 기본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안전수준은 제조물책임법의 시행만으로는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제조물책임법(1999)이 경고결함을 규정하고 있지만(제 2조 2항 다), 본 조항만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것인가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기업의 안전노력 변화

텔파이 조사 결과 소보원안의 제조물책임법안이 기업의 안전노력 증가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안(1994)과 추정조항의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는 제조물책임법(1999)이 기업의 안전노력에 대한 유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텔파이 조사에서 정부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기업의 제조물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는데 비하여, 제조물책임법(1999)은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기업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제 4조 1항 3목). 법령에 의한 안전규제와 제조물책임을 동일시하는 본 법이 기업에게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기업의 주의·관찰 의무가 제조물책임법(1999)에 적극적으로 규정(제 4조 2항)된 사실을 기업의 안전 노력에 대한 유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책 텔파이 기법을 통하여 예측하고, 그 예측된 결과를 소비자주권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소비자의 피해구제 측면에서 제조물책임법이 법에 호소하기 힘든 소비자가 제조물책임소송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업의 자율적인 구제나 분쟁조정 등을 통한 소송 외 피해구제를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피해구제의 활성화정도가 달라지는데, 특히 추정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피해구제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소송·자율적 교섭 등에서 책임판단이 크게 교란되지 않을 것이라는 텔파이 조사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 이 결과에 비추어 추정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현 제조물책임법(1999)이 소비자 보호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소송 및 소송 외 구제 환경을 개선하여 적극적인 피해구제 경로를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소비자의 피해예방 측면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의 주의 수준을 크게 경감시키지 않으면서, 기업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품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안전노력에 미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특히 배상한도액을 설정하는 경우 기업의 안전노력이 감소하는 정도가 가장 작을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현 제조물책임법(1999)이 기업의 주의·관찰 의무(제 4조 2항)를 인정하고 있지만, 배상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령에 의한 안전규제와 제조물책임을 동일시하고 있다(제 4조 1항 3목)는 점에서 현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의 안전노력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다. 충분한 안전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안전 및 표시규제를 확충할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의 특징은 첫째, 제조물책임법의 영향이 법적 책임제도를 넘어서 소비자 안전과 시장 내 상품선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포용하였고 둘째, 상품과 관련한 피해는 기업의 행동과 소비

자의 행동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업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주의 수준의 변화까지 고려하였다는데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소송과 소송 외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운영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상담이 활발하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제와 기존의 불법행위법 체제하에서 승소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업과 소비자간의 개별적인 교섭이나 재판 전 화해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소송 및 상담사례를 통하여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제조물책임법이 어떠한 소비자 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기존의 불법행위법제와 비교하여 논의하였을 뿐 행정적인 규제는 다루지 않았다. 본래 사후적인 제조물책임법과 사전적인 행정규제는 별개의 것이다. 그렇지만 제조물책임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법원이 준규제기관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법과 행정규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과 안전규제를, 소비자의 정보문제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과 정보정책을 비교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상품품목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유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강창경·최병록·박희주(1994).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2) 강한나(1995). 제조물책임에 관한 경제적 분석.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공업진흥청(1989a). 제조물책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공업표준협회.
- 4) 공업진흥청(1989b). 각국의 제조물책임 판례. 한국공업표준협회.
- 5) 구분천(1996).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와

- 입법방향,”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49.
- 6) 김은자(1997). 제조물책임제도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 7) 김일중(1997).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관한 범경 제학적 일고.” 소비자학 연구 8(1): 73-99.
 - 8) 김일중·장재호(1998). “한국의 제조물책임(PL): 판례를 통한 경제적 분석,” 경제학연구 46(2): 63-94.
 - 9) 박기동(1994). “미국의 제조물책임 소송: 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을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8:421-468.
 - 10) 손정연(1996).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고찰.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1) 송태희(1995). 제조물책임원칙의 범경제학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2) 신광식·구본천(1996).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13) 양덕순·이기춘(1997). “소비자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5(3): 259-274.
 - 14) 이상정·박인섭(1989).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15) 이영애(1994). “제조물책임법리의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8:395-420.
 - 16) 조성환(1992). 제조물책임과 상품안전에 관한 연구: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7) 최병록(1994).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최병록(1996).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법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
 - 19) 하건호(1987). 미국의 제조물책임과 우리나라 수출관련기업의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 한국공업표준협회(1991). 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 제조물책임.
 - 21) 한국무역협회(1990).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및 소송사례.
 - 22) 한국소비자보호원(1989). 소비자상담연보 및 피해구제 사례집.
 - 23)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보고서.
 - 24) 한봉희(1997). 제조물책임법론. 대간사.
 - 25) 허경옥(1996).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4(5): 67-84.
 - 26) 國民生活 センター(1996). 消費生活 年報.
 - 27) Dunn, William N.(1994).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Prentice Hall, Inc.
 - 28) Epstein, Richard A.(1985). “Product Liability as an Insurance Market,” *Journal of Legal Studies* 14:645-669.
 - 29) Greer, Thomas V.(1987). “Product Liability i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The New Legal Situ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0: 337-348.
 - 30) Hodeges, Christopher J.S.(1993). *Product Liability: European Laws and Practice*. London: Sweet&Maxwell.
 - 31) Litan, Robert E.(1988). *Liability: Perspective and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32) Litan, Robert E.(1991). “The Safety and Innovation Effects of U.S. Liability Law: The Evidence,” *Journal of Legal Studies* 81(2): 59-64.
 - 33) OECD(1995). *Consumer Policy in OECD countries: 1993-1994*.
 - 34) Turnoff, M.(1970). “The Design of a Policy Delphi,”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2:149-171.
 - 35) Turnoff, M.(1975). “The Policy Delphi,” Linstone, H.A. & Turnoff, M.(ed.). *The Delphi Method: Techniques and Application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36) Dietz, T.(1987). “Method for Analyzing Data from Delphi Panels: Some Evidence from a Forecasting Study,”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1:79-85.

별 첨

제조물책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나. 제조물의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

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 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책임이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

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병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